

영천 중부교회 정관 초안

목 차

- 제 1 장 : 총칙
- 제 2 장 : 회원 - 교인의 권리와 의무
- 제 3 장 : 조직과 관리
- 제 4 장 : 예배와 집회
- 제 5 장 : 직원의 임무 선거 임직
- 제 6 장 : 공동의회(議會)
- 제 7 장 : 당회(치리회)
- 제 8 장 : 제직회
- 제 9 장 : 부속기관
- 제 10 장 : 인사
- 제 11 장 : 재산
- 제 12 장 : 재정
- 제 13 장 :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예우
- 제 14 장 : 사업과 법인
- 제 15 장 : 회계 감사
- 제 16 장 : 상·벌(권징)
- 제 17 장 : 부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천 중부교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하며, 교회대표인 당회장을 회장이라 칭하며, 정치, 헌법적 규칙, 헌법의 용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헌법을 지칭한다).

제2조(주소지) 본회는 경상북도 영천시 문내 2길 14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와 경동노회의 지도와 본 정관 제4조 제5조 제6조에 입각하여 본회의 주권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모든 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복음화비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그룹 예배(성전)와 소그룹 목장(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 교회학교(주일학교와 주중학교)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지도자를 키운다.
3. 불우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드러낸다.
4.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세워 지역과 민족, 열방을 복음화 한다.
5.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여 세계복음화의 예수비전을 이룬다.
6. 성경의 진리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 나타냄으로 이 지역과 민족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제4조 (비전과 사명) 비전은 세계 복음화이다. 즉 “각 나라와 족속들을 행복자들로 세우는 것이다.”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다.”

제5조(신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을 신조로 한다.

제6조(신앙고백) 본회의 신앙고백은 사도신경과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한다.

1.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영감 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2. 우리는 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3.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을 믿는다.
4. 우리는 성육신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고 역사적 재림을 믿는다.
5.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믿는다.

6. 우리는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며, 회개하고 믿게 하시며, 내주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영혼, 마음, 인격, 환경을 부흥케 하며, 복음을 증거 하게 하시니 사역을 믿는다.
7.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와 주되심을 믿는다.
8.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예배, 복음 증거, 교육, 성도의 교제, 기도, 봉사, 그리고 선교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책임을 믿는다.
9.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며 역사적인 재림,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믿는다.
10.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와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는다.

제 2 장 회원 -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7조(교인정의) 교인의 구분과 각각의 권리는 다음 같다. 제7조는 헌법 내용임으로 총회에서 헌법이 수정될 경우 공동의회 정관 개정 없이 회장과 공동의회 서기가 헌법 수정된 내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 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 이상 되고 만 14세 이상 된 교인으로서 당회에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세례교인**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당회에서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단, 새가족 반을 수료하고 구원 간증문을 제출하여 인정되면 학습으로 간주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
4. **유아세례교인** :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부모 중 한쪽만 세례교인이면 가능하다).
5. **입교인** :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당회의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이다.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제8조(입회결정) 본회 교인의 입회는 당회의 직무이다. (제9장 제5조 2항).

제9조(의무) 본회 교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총회 헌법적 규칙 제2조).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 직원(직분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함이 당연하고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처리함을 순히 복종해야 한다.

제10조(권리) 헌법적 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교인의 기본권이 보장된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 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 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는 권한과 공동의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제11조(교인퇴회) 본회 교인이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2년 이상 예배 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회원 명부에서 삭제하며 별명부에 기재한다.

제 3장 조직과 관리 - 조직과 관리

제12조(목장 조직) 본회 목장은 영천 중부 교회 안에 교회(church in church)다. 여러 목장 교회가 모여 영천중부교회를 이룬다.

제13조(목장 기능) 목장은 영천 중부교회 안에 교회로서 예배, 전도, 정착, 양육, 교제, 훈련, 재생산의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제14조(리더) 목장을 섬기는 자를 목자라 하고, 목자의 임명은 본회 회장이 한다.

- ① 목자의 자격은 사역자훈련 졸업자나 재학 중인자로 한다.
- ②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참된 아버가 되어 영혼을 섬길 뿐 아니라 참된 스승이 되어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라야 한다.
- ③ 목원들을 잘 섬기는 자라야 한다.
- ④ 매일 목장과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 ⑤ 본회 회장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열매를 맺는 자라야 한다.

제15조(예배와 집례자) 목장 예배는 가능한 가정에서 모이며, 매주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6조(보고와 관리) 매주 목자는 목장 보고서를 본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목자는 목원들의 매주 공 예배 출결사항을 점검하고 심방할 뿐 아니라 교역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보고하여 협력하여 영혼을 섬기도록 한다.

제17조(경조사) 교역자의 지도에 따라 목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체가족들이 총동원하여 한 가족처럼 애경사에 축하하며 상을 당했을 경우 조문을 하도록 한다. 경조사의 한계는 직계 가족으로 제한한다. 목장에서 애경사가 발생할 경우 목자는 교역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고 힘껏 축하나 조문을 해야 한다.

제18조(권징) 목자는 본회 회장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열매를 맺으므로 한 공동체성을 지켜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는 본회 회장은 임명을 철회하고 교회의 덕을 해치고 신앙의 혼란과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당회에서 권징토록 한다.

제 4 장 예배와 집회

제19조(예배) 본회에서 실시하는 공식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오전예배 :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
2. 주일오후찬양예배 : 주일 오후 2시에 드리는 예배
3. 수요기도회예배 :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리는 예배
4. 새벽기도회예배 :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드리는 예배
5. 목장예배 : 각 목장별로 드리는 예배
6. 주일학교 : 주일학교 각 부에서 드리는 예배

제20조(집회) 본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철야기도회 :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4. 전도집회 : 구원 받아야 할 예비신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집회
6. 수양회 : 신앙 수련을 위해서 갖는 집회
7. 강습회 : 신앙과 교육과 교양을 위해 갖는 집회
8. 신앙성숙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축제 (다양한 문화행사)

제21조(행사를 위한 예배)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서 드리는 위임, 임직, 은

퇴, 추대예배는 당회가 결정하여 드린다.

제22조 위임, 임직, 은퇴, 추대 예배는 당회가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며, 예배 설교자 및 순서담당자 선정은 회장이 한다.(총회 제82회, 85회 결의).

제 5 장 직원의 임무, 선거, 임직

제23조 본회의 항존직은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치리와 강도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하는 장로와 제6장 1조에 준하여 교인의 선택을 받아 목사에게 안수임직을 받은 안수집사이다.

1. **목사** :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여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예배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총괄한다.
2. **부목사** :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이다(정치 제4장 제4조 3항).
3. **강도사(전도사)** : 준 직원으로서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 노회 관리 아래 있다(정치, 제3장 제4조).
4. **장로** :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보좌하며 당회장의 지도를 따라 교인들을 섬기며 보호한다. 치리 장로의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생일까지이다.
5. **협동장로** : 본 교회에 전입하여 온 무임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가 되며 협동장로는 해 당회 때마다 당회의 요청시 언권회원이 되며, 입회 후 3년이 경과되고 노회에서 장로 증원허락을 받고 공동의회에서 시무 장로로 피선되면 노회고시를 거쳐 취임식만 행함으로 시무장로가 된다.
7. **안수집사** : 정치 제6장 제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8. **무임안수집사** : 타 교회에서 이명 해 온 안수집사를 무임안수집사로 임명하여 교회를 섬기게 한다. 무임안수집사는 본 교회에 전입하여 제 6장 4조 4항에 의해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여 안수집사가 된다.
9. **권사** : 정치 제3장 3조에 준하여 만45세 이상 된 여신도중 공동의회에서 2/3의 표를 얻어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 만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 그 직무는 당회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봉사한다.
10. **명예권사** : 명예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11. **무임권사** : 본 교회에 전입하여 온 권사를 무임권사로 임명하여 시무권사를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게 한다. 무임권사는 타 교회에서 이명 해 온 후 제 3장 3조 3항에 의해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여 시무권사가 된다.
12. **서리집사** :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서리집사 임명 기준은 세례(입교)교인 중에서 하며, 만 70세까지이다.

제24조(선거원칙) 본회의 모든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서 민주적 선거방식으로 하

며 헌법적 규칙 제7조에 준하나 주권이 교인에게 있지 않고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으로 교인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함이 옳다. 공동의회 참석한 회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 다양한 선거방식을 선택하여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제25조(선거권 피선거권) 세례교인, 입교인은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거나 치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26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1. 본회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헌법적 규칙, 제7조1항).
2. 후보의 자격을 가진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선거인을 상대로 심방하거나 향응과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제27조(선거일 공고) 당회는 본회의 선거일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

제28조(선거사무) 본회의 선거사무를 위한 선거관리 위원은 회장이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가장 먼저 발표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29조(후보자)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담임목사 청빙 청원을 위해 당회가 청빙청원위원회가 되어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2. 장로 투표를 위해 헌법 5장 3조의 정한 자격 기준과 집사 투표를 위해 헌법 6장 2조의 자격 기준과, 권사 투표를 위해 헌법 3장 3조의 자격 기준에 의한 자라야 하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은 사역자훈련을 수료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열매를 맺는 자라야 한다.

제30조(선거공보) 본회는 선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 및 교회섬기는 경력과 헌신 내용을 교회 게시판, 및 교회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1조(선거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한다.

1. **목사청빙청원** : 당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가부의 투표를 하되 공동의회 총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득한 자를 노회에 청원 한다.
2. **장로** : 노회에 장로증원을 청원하여 허락받은 인원의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당선자가 선출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차 투표까지만 할 수 있다.
3. **안수집사와 권사**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택일할 수 있다.

- ①당회의 후보자 추천으로 투표하여 2/3 이상의 득표로 결정한다.
- ②공동의회에서 1차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에 선출된 후보자를 놓고 2차로 개인별 찬반 투표를 하여 2/3 이상의 득표로 한다.

제32조(위임 및 임직) 목사 위임 및 직원 임직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임직은 담임목사 위임과 직원 임직으로 구분하며 임직은 장로와 집사의 임직, 권사의 취임이 있다.
- 2. 장로 피택자는 노회 장로고시를 합격해야 한다.
- 3.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 주관이나 장로와 집사의 임직식과 권사의 취임식은 본 교회 당회가 주관하며 모든 임직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직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교회 재정으로 부담하되 검소하게 하고, 축금을 금하고 작은 선물이나 축하의 꽃다발은 허용한다.
- 5. 명예권사는 임명 선서를 해야 한다.
- 6. 70세 정년제에 해당된 은퇴의 법적 시점은 만 70세가 되는 생일로 하며 은퇴 및 원로 장로 추대식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은퇴자에 대한 예우는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33조(교육) 임직을 위해 피택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다.

- 1.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 교육은 피택 선거 후 6개월 이상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시행 한다.
- 2.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식을 유보하거나(1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공동의회(共同議會)

제34조(권한)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공동의회를 둔다.(정치 제 21장 제1조)

제35조(조직)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 1.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만 14세 이상 입교인), 무흠 세례교인으로 한다.
- 2. 공동의회에는 회장과 서기를 두며,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당회의 서기가 겸임한다.(정치 제21장 제1조3).

제36조(회의 소집)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 2. 제직회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 3.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 4. 상회(노회, 총회)의 명령이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 5. 합법적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 청원이 있을 때 당회는 2주 안에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

여야 한다. 이 기간에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때 참석인원으로 결의한다.

제37조(회의) 공동의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말 공동의회:** 제직회의 결산보고와 차기년도 예산을 채용하며 그 밖의 범대로 제출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는 12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 공동의회:** 공동의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안건을 명시하여 1주일 전에 광고하여 소집하되 제출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38조(임무 의결정족수) 목사 청빙, 장로와 집사 피택, 정관의 제정과 개정, 예산과 결산 승인, 부동산 처분, 원로목사와 장로 추대, 당회에 위임한 처분권, 교단 가입과 탈퇴 등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그 밖의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백표는 전체 투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교회 분쟁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공동의회 정수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9조(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본회가 채용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 7 장 당회(치리회)

제40조(성격) 본회의 당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와 제 3조에 의하여 구성된 치리회이다.

제41조(조직과 운영) 조직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노회가 위임한 본 교회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2. **소집 :**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소집하며,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로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사임)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過半數)가 소집할 수 있다(정치 제9장 제 7조).
3. **당회 성수 :** 목사 1인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4. **당회 서기 :**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회의 회록과 각종 명부를 기록 보관한다.

제42조(직무 및 권한) 당회의 직무는 헌법(정치, 제9장 제5조)에 명시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수행한다.

1.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

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일은 당회 임원에게 일임하여 수행한다.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하는 일은 회장에게 일임하여 수행한다.

2. 성례를 거행한다.(회장의 요청시 협동장로, 무임장로를 배병과 배잔에 참여케할 수 있다.)
3. 부목사 강도사(전도사) 청원하는 일
4. 장로와 집사를 임직한다.
5. 차량 취득이나 처분을 결의하는 일(실무는 제직회 차량관리부에서 한다.)
6. 권징 하는 일을 행한다.
7.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한다.
8. 교회에 속한 부동산에 관한 일을 장리(掌理)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은 당회결의로 취득할 수 있으나 매매하거나 처분하는 일은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당회에 일임할 경우에 당회가 처분할 수 있다.
9. 교회경상비와 각 기관 재정 감사하는 일을 행한다.
10. 특별헌금 즉 부동산 구입이나 교회개척을 위한 헌금 수집하는 일은 당회결의로 한다. 이외에 일반적인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과 각 항 헌금 수집하는 날자와 방침을 정하는 일과 예배와 목회 계획 및 행정은 회장에게 일임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11.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교회 경상 재정운영세칙을 만드는 일.
12. 교회 내 기구설립 및 폐지하는 일
13. 경상 예산 중 예비비 사용권을 가진다.

제43조(당회장 유고시) 당회장 유고시 다음과 같은 회장에 의해 회의를 주관한다.

1. 임시당회장 : 당회장이 사임하였을 경우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한다. 파송이 없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회집 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한다.(정치 제9장 제4조).
2. 대리회장 : 본회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나, 본회 회장의 신병, 출타 등의 사유로 공석일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하며, 대리회장을 세울 경우 임기는 해당회로만 국한한다(정치 제9장 제3조).

제44조(명부록) 당회가 관리하는 각종 명부록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책별 및 해별인 명부(책별, 해별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 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 9. 교회 역사

제 8 장 제직회

제45조(성격) 본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제직회를 둔다(정치 제21장 제2조).

제46조(조직) 제직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제직회 회원은 당회원과 교역자, 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한다.
다만 당회가 제직회 사무를 위하여 서리집사, 원로(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 등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2.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회계 1인, 각 부서에 부장과 부원을 둔다. 제직회 각 부서는 다음과 같다.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 부서임원(서기 회계)을 선정하여 봉사할 수 있다.

제47조(회집) 정기 제직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제직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48조(개회성수) 제직회 및 부 개회성수는 다음과 같다.

1. 개회성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다.
2. 개회 성수가 현저히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 할 수 있다.

제49조(제직회 직무)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제직회는 교회(공동의회)에서 위임한 금전을 관리 처리(집행)한다.
2. 구제와 경비에 관한 업무와 금전을 출납한다.
3.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익년도 교회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여 보고한다.

제50조(각부의 직무) 제직회 각 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부서 업무라 함은 제직회에 국한하며 당회의 직무를 월권해서는 안 된다.

1. 재정부 : 예산편성 및 배당, 재정청원 접수 및 배당, 재정수납 및 지출 청원, 각종 보험, 및 공과금, 사무비에 관한 일체와 사택과 목회자와 관련된 재정, 강사 사례비, 노회, 및 시찰회 상회비, 적립금, 기채 이자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공동의회에서 마련한 운영세칙에 의거 처리한다.
2. 교육부 : 교회학교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한다.
3. 찬양사역부 : 찬양사역원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한다.
4. 구제봉사부 : 식당운영 및 구제봉사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5. 재단관리부 : 교회건물, 사택의 관리(수리 및 보수), 교회 미화, 교회 비품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차량구입 및 관리에 관한 업무와 일체 재정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제51조(사업계획) 새로 임명된 제직회 각 부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을 11월 첫째 주일까지 예산편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2조(예산편성위원회) 예산편성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제직회 재정부원과 각 부서 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며, 예산편성위원회 위원장은 재정부장이 되고 서기는 제직회 원회계가 겸임한다.
2. 본 위원회는 제직회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익년도 예산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당회와 제직회 그리고 12월 중 연말 정기공동의회에 제출한다.
3. 본 위원회는 제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 제직회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 9 장 부속기관

제54조(주일학교) 모세, 사무엘, 요셉, 다니엘과 같은 영적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주일학교를 설치 운영한다.

1. 주일학교 설립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고,
2. 주일학교관할은 당회의 관할 하에 두며, 제직회 교육부서가 지원한다.
3. 주일학교조직은 본회 회장이 교장이 되며 주일학교 각 부서의 각 부장 및 교사는 담당교역자와 해당부서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4. 주일학교는 당회 결의로 형편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 10 장 인사

제55조(인사권) 본회는 담임목사 청빙청원과 부목사와 강도사 청빙청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은 헌법의 규정에 따르며 이외에 본회의 인사권은 본회 회장에게 있다.

제56조(인사범위) 본회의 인사는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조직원 그리고 본회가 필요로 하는 직원과 노회청원이 없이 이루어지는 교역자를 그 범위로 한다. 다만 조직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임역원의 인사는 인준한다.(청년회, 학생회, 전도회,

스포츠동호회 등).

제57조(실행) 인사의 실행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인사는 매년 12월 첫 주일 이후에 실시하나, 결원이 생겼을 경우나 추가인사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제직회 각 부서의 임명은 1인 1부서를 원칙으로 한다.

제58조(임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명예권사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심의) 본회 회장은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 적소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60조(순종) 교회는 회장의 임명에 대하여 순종하여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회장에게 통고하고 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천거) 인사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천거할 수 있다.

1. 인사권자의 인사가 시행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조직의 장이 회장에게 천거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원하는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대하여 회장은 특별한 결격사유나 하자가 없는 경우 참고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62조(부교역자) 부교역자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본회 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2. 청빙해야할 부교역자의 수와 직급 성별은 본회 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63조(기타직원) 본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할 수 있다.

제 11 장 재산

제64조(교회재산) 본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본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總有/지분권 없는 공동재산: 대법원판례)로 한다.

제65조(취득원칙) 본회 부동산 취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전도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중히 검토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특별헌금을 작성케 할 수 있다.
3. 부동산은 사용목적, 사용가치, 위치, 가격조건, 법적 저촉여부, 장기전망, 처분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제66조(부동산 취득과 등기)

1. 부동산의 취득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2. 부동산 소유 등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천 중부교회」로 한다.

제67조(사용) 본회 부동산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부동산은 본회가 전용(全用)한다.
2. 교인 및 그 가족의 결혼식 등의 예식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제직회 재단관리부장을 거쳐 당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상회인 노회나 총회 또는 본 교회의 기관이 소속한 연합회 등 기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용에 대여 할 경우에도 제직회 재단관리부장을 거쳐 당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타 교회와의 합동 행사나 일반 사회단체 및 기관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직회 재단관리부장을 거쳐 당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5. 교회내 기관에서 시설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 일주일 전에 제직회 재단관리부장과 본회 회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68조(부동산관리)

1. 부동산의 관리와 재정지출은 제직회가 집행하며 당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2. 교회는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제직회는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를 작성하고 관련 등기문서와 함께 보관한다.

제69조(처분) 본회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교회의 모든 재산의 사용과 처분은 교회의 유익을 우선해야 한다.
2. 불필요하게 된 교회의 재산은 손익 여부를 판정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있다.
3. 부동산 처분은 공동의회 결의로 한다. 다만 공동의회가 처분을 결의하여 처분할 부동산을 명시하여 당회에 위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70조(재산 취득, 처분 집행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당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다.

본회의 결정된 취득과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하려고 할 때 당회 결 의로서 회장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대행케 한다. 단, 담임목사가 사임하여 공석일 때 에는 공동의회에서 장로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물품구입과 보수공사) 예산안에서 물품구입이나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경우 수의계 약이 아닌 비교견적을 받아 재단관리부장과 회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단, 소소한 물품 구입이나 간단한 보수공사는 제외).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도 동일하다. 수의계약이 아닌 비교견적을 받아 부서장과 회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해야 하며 (단, 소소한 물품은 제외), 구입한 후 재단관리부에 보고함으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재단관 리부에서 관리토록 해야 한다. 단 각 부서에서 구입할 물품이 부서의 힘으로 구입할 수 없 을 때는 재단관리부에 요청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72조(차량취득과 처분) 차량취득과 처분권은 당회에 있고, 실무적인 일은 제직회 차량 관리부에서 한다.

제73조(차량관리) 제직회 차량관리부에서 관리하며 지원한다.

- ① 차량을 사용하기 원하는 부서에서는 일주일전에 제직회 관리부장과 회장의 허락을 받아 야 한다.
- ② 회비를 받아 차량운행을 요청할 경우는 기름값과 도로세를 부담해야 한다.

제74조(보험과 사고책임) 본회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운전자와 보험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본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75조(분쟁시 재산권) 분쟁시 교회 재산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지교회의 분립은 노회의 고유 권한이다(총회 헌법 정치 제10장6조5항).
2. 어떤 경우에서라도 교회 분립, 분열로 인한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
3. 세례, 입교식 및 임직선서의 위반으로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로부터 치리(권징)를 받 은 자는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며 재산권(처분, 사용, 수익권, 기타)이 상실된다.

제76조(기채 승인) 기채 승인 권은 당회에 있다.

제 12장 재정

제77조(회계연도) 본회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8조(범위) 교회의 모든 재정은 현금과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79조(원칙) 본회 재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투명하여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2. 본회의 재정 실무는 제직회 재정부장이 담당한다.
3. 본회의 모든 기관의 현금 수지상황을 매주 마다 회계담당자가 본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회계구분) 회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현금을 관리 집행한다.
3.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제81조(재정 집행권) 재정 지출 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1. 공동의회에서 인준된 재정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준되지 않는 재정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예비비 범위 안에서 당회의 결의로 지출하며 예비비를 벗어난 지출은 제직회에서 추경을 세워 집행할 수 있다. 매 회기마다 예비비의 일정비율을 당회의 결의로 회장의 대외 활동비로 사용케 할 수 있다.
2. 담당부장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정부장에게 제출하고 재정부장은 회장의 결재 후 지출한다.
3. 회장이 공석이거나 유고시에는 재정부장이 집행하고 회장 귀임 후 후결한다.
4. 전결권은 회장이 승낙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5. 교회를 대표해서 지출하는 교회 및 노회의 애경사, 심방 등의 지출 항목은 재정부의 청구로 지출하여 본회 회장이 집행한다.
6. 매 회계연도 11월 말 결산이 끝난 후 다음 회기 예산 편성 공동의회 예산 수립 전까지는 통상적인 재정집행은 전년도 예산안에서 집행하되 추가된 부분은 예산 수립 후에 추가 집행토록 한다.

제82조(기장방법) 본회의 회계는 단식부기로 기장한다.

제83조(장부조직) 본회의 회계장부는 원부와 보조부로 나누어 기장하며 보조부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84조(관리) 모든 재정 수입은 재정부의 집계를 마친 후 당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익일(금융기관 영업일)에 지정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5조(지출 증빙서) 본회의 재정을 지출할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

여야 하며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교육)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서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당회는 바른 헌금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87조(관리의무) 교회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3장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예우

제88조(교역자 시무 기간)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담임)목사 : 위임목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70세 정년까지 시무 하며(정치 제4장 제4조1항), 임시목사의 시무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부목사(전도사) : 부목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속 시무할 경우 헌법에 준한다(정치 제4장 제4조 3항).

제89조(관리 및 직원) 본회의 모든 직원은 회장 관할 하에 둔다.

제90조(예우) 예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교역자와 직원은 교회 재정 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2.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로 지급한다.
3.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연구와 수양을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 휴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휴가비를 지급한다. 휴가비는 예산에 편성한다.
4. 6년 이상 성실히 목회한 담임목사에게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기간과 기타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5.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91조(퇴직위로금)

1. 교역자나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2. 퇴직위로금은 보수월액(기본 사례금)의 20%를 적립한 후 지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근무 년 수 계산에 있어서 6개월 초과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이하는 1/2년으로 한다.

제 14 장 사업과 법인

제92조(원칙) 본회는 제1장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3조(형태) 본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은 비영리로 한다.

제94조(주체) 본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의 주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천 중부교회」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산하 기관 및 조직과 성도 개인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제95조(종류)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2.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사업
3. 구제와 관련된 사업
4.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5.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6조(법인설립) 본 교회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다. 교회 법인 설립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15 장 회계 감사

제97조(정기감사) 본회 및 각 기관의 회계는 매년 1차 이상 당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하여 감사할 수 있고, 감사결과를 당회를 통하여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98조(수시감사 및 지도교육) 기관감사는 필요시 본 제직회 회계가 각 기관의 회계를 수시감사 및 지도교육을 한다. 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감사 소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 책임으로 한다.

제99조(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조치) 각 기관은 감사의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장 상·벌(권징)

제100조(포상) 포상할 만한 사안이 있을 경우 본회 회장이 시행한다.

제101조(권징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

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권징조례 제2조). 본회의 사법권은 당회에 있다.

제102조(권징방법)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규정대로 하되 소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하며, 치리(권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송하고자 하는 원고가 있어야 한다. 단 권징(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하여야 한다.

제 17 장 부칙

제103조(보칙 補則) 본 규정에 미비 된 것은 성경과 교단 헌법에 따르며 헌법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집을 참고하여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한다.

제104조(정관개정) 본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을 원할 경우 개정안을 공동의회 7일전까지 공동의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시행일)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